

5-1-3 기숙사 규정

제1조(명칭) 우리 대학교 기숙사는 “신애학사”라 칭한다. (이하 “신애학사”라 한다)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 신애학사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6.12.>

제3조(입사기간) 정규학기의 입사기간은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로 한다. 단,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방학기간 중 신애학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12., 2017.5.15., 2019.12.20.>

제4조(입사요건) 신애학사 시설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. 다만,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감은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12., 2017.5.15.>

제5조(사생수칙) 사생수칙은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신애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운영하며, 이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4.6.12., 2017.5.15.>

제2장 조 직

제6조(사감) 사감은 학생처장의 명을 받아 기숙사 전반에 걸친 지도와 감독의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17.5.15.>

1. 사생들의 생활과 학습에 관한 사항
2. 사생들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
3. 신애학사 운영과 사생수칙의 수행 및 지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6.12.>
4. 신애학사에 소속된 근로장학생 관리
5. 학생 건의사항 결의 및 처리
6. 제반 신애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
7. 신애학사 건물관리, 물품관리 및 보안점검
8. 사생의 출입관리 및 보고
9.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보안
10. 사생자치회의 지도
11.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유도 및 구급활동 <신설 2014.6.12.>
12. 소방·전기시설의 상태 점검 및 관리 <신설 2014.6.12.>

제7조(사생자치회) ① 자치적인 사생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생자치회를 운영한다. <개정 2014.6.12., 2017.5.15., 2019.12.20., 2023.2.28>

1. 조직 : 기숙사 임원은 각 층장(1층장, 2층장, 3층장)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매 학기 초 사생자치회에서 선발한다.

2. 기능 : 총장은 사생을 대표하고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에 힘쓰며, 신애학사 개선을 위한 사생의 의견을 대학에 제안하고, 각 층의 사생 관리(인원 파악, 상벌점 관리 등)를 지원한다.

제3장 신애학사운영위원회

제8조(설치) 신애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 사항은 신애학사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<개정 2014.6.12., 2017.5.15.>

제8조의2(구성) 신애학사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2.28.>

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단 사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7.5.15.]

제9조 <삭제 2014.6.12.>

제10조 <삭제 2014.6.12.>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4.6.12., 2017.5.15.>

1. 기숙사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신애학사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회의)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.<개정 2017.5.15.>

1.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2.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위원장 유고 시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장 입사자격 및 사생선발

제13조(입사자격 및 사생선발) ① 신애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신입생(편입생 포함) 및 재학생(직후학기 복학예정자 포함)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0.>

② 신애학사의 사생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. <개정 2019.12.20., 2020.3.12.>

1. 재학생 : 거리(50%), 직전학기 성적(50%)으로 선발하되, 가계곤란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, 동점자 발생 시 원거리 순으로 선발한다.
2. 신입생 및 편입생 : 거리(100%)를 반영하여 선발하되, 가계곤란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, 동점자 발생 시 원거리 순으로 선발한다.

③ 장애학생 본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외국인 유학생 등 소수집단학생을 우선

선발하며, 선발 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. <개정 2019.12.20.>

④ 사생으로 선발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기숙사비를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0.>

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. <개정 2019.12.20.>

제13조의2(입사제한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 <개정 2014.6.12., 2019.12.20.>

1. 퇴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2. 사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사한 자
3.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4.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
5. 휴학 중인 자
6.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
7. 직전학기에 받은 별점의 총합계가 20점을 초과하는 자
8. 기타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14조(입사등록) 신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6.12., 2019.12.20.>

1. 입사원서 1부【별지 제1호 서식】
2. 서약서 1부【별지 제2호 서식】
3. 주민등록등본 1부
4. 결핵진단서(병원 또는 보건소 발행) 1부
5. 반명함판 사진 2매(신규 입사자의 경우 3매)

제15조<삭제 2017.5.15.>

제16조(퇴사처분)

- ① 특별한 사유 외에는 학기중 퇴사를 금한다.
- ②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신애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감이 퇴사를 명한다.<개정 2014.6.12., 2017.5.15., 2019.12.20.>
 1. 사생수칙위반으로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자
 2. 위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
 3. 휴학, 제적된 자

제17조(퇴사절차) 학기 중 퇴사를 원하는 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물의 반납 확인을 받은 후 학부모의 자필 동의서와 퇴사서를 사감에게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허가를 얻는다.

제18조 <삭제 2014.6.12.>

제19조(시설물 이용과 변상)

- ① 모든 시설 및 비품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한다.

- ② 모든 비품은 허락없이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다.
- ③ 신애학사 설비 및 공동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자는 변상해야 한다.

제5장 경 비

제20조(신애학사비)

- ① 신애학사비는 관리비, 식비로 구분하며 매학기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6.12., 2017.5.15.>
- ② 정규학기 중도퇴사자의 관리비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.6.12.>
- ③ 식비는 결석을 사유로 환불받을 수 없다. 단, 퇴사 시에는 퇴사 다음날부터의 식비 잔여금을 환불 받는다.
- ④ 추가입사생의 관리비는 잔여기간을 주단위로 산정하여 부과한다.<개정 2014.6.12.>
- ⑤ 방학기간 입사 시 관리비는 신청기간에 따라 납부하며,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14.6.12.>
- ⑥ 방학 중 입사자가 조기 퇴사하는 경우 관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<신설 2014.6.12.>

제6장 사생수칙<삭제 2014.6.12.>

제21조~제27조 <삭제 2014.6.12.>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 <개정 2014.6.12., 2017.5.15., 2019.12.20.>

신애학사 입사원서

		※ 접수일자		년 월 일		
		※ 접수번호		확인		
입사현황	신규(), 재입사()		※ _____ 호실(입구1층, 입구2층, 창측1층, 창측2층)			
본 인	성 명		학 번 (수험번호)	사 진 (3cm × 4cm) (입사생은 모두 부착) ※ 신규입사 2매, 재입사 1매 별도 추가 제출 할 것		
	학 년		생년월일			
	주 소					
	전화(집)		휴대전화			
보호자	성 명		학생과의 관 계	전화 번호		
	주 소					
우선선발 및 가산점 대상 (해당자만 체크)		☐ 장애인(본인) ☐ 북한이탈주민가정 ☐ 다문화가정 ☐ 가계곤란자(기초·차상위) ※ 우선선발 및 가산점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				
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	※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예수대학교 신애학사(기숙사)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 1.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예수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애학사 입사생 발 관련 제반 업무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(한글), 학번(수험번호), 학년, 생년월일, 주소, 본인 연락처, 보 호자성명, 보호자와의 관계, 보호자 연락처, 보호자 주소, <u>소수집단학생(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 정, 외국인유학생) 및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여부</u>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(단, 정보주체 동의 철회 시 즉시 폐기) 4.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 내용 : 귀하는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 가 있습니다.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애학사 입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■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 (예)() (아니오)()					

(※항 - 기록하지 마시오. 호실배정 후 학교에서 기록함)

본인은 신애학사(기숙사) 입사원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본 인 : (인)

보 호 자 : (인)

예 수 대 학 교 총 장 귀 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서 약 서

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기간 중 신애학사의 사칙을 준수할 것을 보호자와 같이 서약하고, 만일 사칙 위반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학교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.

[서 약 자]

학 생 성 명 : (인)

보호자 성 명 : (인)

년 월 일

예 수 대 학 교 총 장 귀하

【별표 제1호】 <신설 2019.12.20.>

신애학사 신입생(편입생 포함) 및 재학생 선발 기준표

1. 재학생 배점 기준표(100점 만점)

거리(거주지)	점수	직전학기 실점평균 환산점수	점수	소득분위	점수 (가산점)
전북권 제외한 기타 지역	50	100 ~ 95	50	기초생활수급자	20
전주시 제외한 전북권 지역	30	94 ~ 90	45	차상위계층	10
전주시	10	89 ~ 85	40		
		84 ~ 80	35		
		79 ~ 75	30		
		74 ~ 70	25		
		69 ~ 65	20		
		64 ~ 60	15		
거주지는 부모(친권자) 기준		60 미만	10		

※ 동점자 발생 시, 원거리 순으로 선발

2. 신입생 및 편입생 배점 기준표(100점 만점)

거리(거주지)	점수	소득분위	점수 (가산점)
전북권 제외한 기타 지역	100	기초생활수급자	20
전주시 제외한 전북권 지역	70	차상위계층	10
전주시 지역	50		
거주지는 부모(친권자) 기준			

※ 동점자 발생 시, 원거리 순으로 선발